

구민의 작은 목소리에도

귀 기울이는 금천구의회

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
2021. 12. 1.(수) 10:00

제232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심사안건
검 토 보 고 서

서울특별시 금천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
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안
(도시안전국 소관)



복 지 건 설 위 원 회
전문위원 추병수

서울특별시 금천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안 검 토 보 고 서

1. 제안경위

- 가. 의안번호 : 제2159호
- 나. 제 출 자 : 금천구청장
- 다. 제출일자 : 2021. 11. 10.
- 라. 회부일자 : 2021. 11. 10.

2. 제안이유

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및 제95조에 따라 우리 구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등 정비방안에 대해 구의회 의견 청취하고자 함.

3.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현황

가. 대 상 : 총4건

(단위 : 건)

구 분		계	도 로	완충녹지	공공공지	비 고
계		4	2	1	1	
해 제 에 관 한 의 건	존치시설 (재정적 집행가능시설)	4	2	1	1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존치시설 • 재정적 집행가능시설 : 예산투입 • 비재정적 집행가능시설 : 민간시행 - 해제시설 • 해제유보시설 : 난개발 우려 등으로 당장 해제 불가능한 시설 • 해제가능시설 : 즉시해제 가능시설 ※ 서울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 가이드라인(17.9.)
	존치시설 (비재정적 집행가능시설)	-	-	-	-	
	해제시설 (해제유보시설)	-	-	-	-	
	해제시설 (해제가능시설)	-	-	-	-	

※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: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도시계획시설

4.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

가. 장기미집행시설 : 4건

(단위 : 백만원)

시설명	사업개요			계획기간 중 사업비(2022~2027)												
	건수	사업 규모 (㎡)	총 사업비	집행방식별 사업비						단계별 사업비						
				총계	재정적			비재정적			1단계			2-1단계		2-2 단계
					국비	시비	구비	민간 투자	공공 기여	'22	'23	'24	'25	'26	'27년 이후	
총계	4	5,126.9	3,389	3,389	-	785	2,494	-	110	2,479	-	-	850	60	-	
도로	2	2,856	2,479	2,479	-	785	1,694	-	-	2,479	-	-	-	-	-	
녹지	1	2,146	410	410	-	-	300	-	110	-	-	-	410	-	-	
공공시설	1	124.9	500	500	-	-	500	-	-	-	-	-	440	60	-	

나. 미집행시설(신규 도시계획 결정시설) : 2건

(단위 : 백만원)

시설명	사업개요			계획기간 중 사업비(2022~2027)												
	건수	사업 규모 (㎡)	총 사업비	집행방식별 사업비						단계별 사업비						
				총계	재정적			비재정적			1단계			2-1단계		2-2 단계
					국비	시비	구비	민간 투자	공공 기여	'22	'23	'24	'25	'26	'27년 이후	
총계	2	1,532.7	11,050	11,050	-	450	10,600	-	-	9,800	400	850	-	-	-	
공공시설	2	1,532.7	11,050	11,050	-	450	10,600	-	-	9,800	400	850	-	-	-	

5. 참고사항

가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」 제48조 및 제85조,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및 제95조

- 1) 지방의회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
- 2)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(안) 의견청취

나. 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」 제68조 [별표4]

- 자치구 설치 대상시설은 해당 구의회 보고

6. 검토의견

가. 제안이유

본 의견청취안은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4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현황 및 단계별

집행계획 등을 수립하여 구의회에 보고하고 의견을 청취하고자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임.

- 제출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4건에 대해 해당 부서에서는 존치하여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의견을 제시하였음.

나. 주요 내용

-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
 -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4건으로, 시설별로는 도로 2건은 시흥재정비촉진지구 해제에 따른 환원시설이며, 완충녹지 및 공공공지 각각 1건으로 장기미집행(10년 이상)된 시설로
 - 시설 총면적은 5,406.9㎡(도로 2,866㎡, 완충녹지 2,416㎡, 공공공지 124.9㎡)이며,
 - 총 사업비는 34억원(도로 24억 9천만원, 완충녹지 4억 1천만원, 공공공지 5억원)소요됨.
-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을 살펴보면 단계별로 3년 이내 1단계 사업으로 4개소, 4~5년 이내의 2-1단계 사업 2개소로 집행계획을 수립함.

다. 검토의견

- 본 안건은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48조(도시·군 계획 시설 결정의 실효 등), 같은법 시행령 제42조(도시·군계획시설 결정의 실효 고시 및 해제권고)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정례회 기간 중 보고하는 것으로
- 도시계획시설 존치의 필요성과 제한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단계별 집행 계획에 따라 적절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면밀히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.

관계법령

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
[시행 2021. 10. 8.] [법률 제18473호, 2021. 10. 8., 일부개정]

제48조(도시·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 등)

① 도시·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·군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·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·군계획시설결정은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잃는다. <개정 2011.4.14.>

② 시·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도시·군계획시설결정이 효력을 잃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.
<개정 2011.4.14.>

③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·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·군계획시설(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·고시한 도시·군계획시설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설치하기로 한 시설은 제외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을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또는 그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·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현황과 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 <신설 2011.4.14., 2013.3.23., 2013.7.16.>

④ 제3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지방의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 또는 군수에게 도시·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권고할 수 있다. <신설 2011.4.14.>

⑤ 제4항에 따라 도시·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권고받은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 또는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시·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위한 도시·군관리계획을 결정하거나 도지사에게 그 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도시·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위한 도시·군관리계획을 결정하여야 한다. <신설 2011.4.14.>

[전문개정 2009.2.6.]

[제목개정 2011.4.14.]

□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」

[시행 2021. 9. 10.] [대통령령 제31961호, 2021. 8. 31., 타법개정]

제42조(도시·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고시 및 해제권고)

① 생략

②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 또는 군수(이하 이 조에서 “지방자치단체의 장”이라 한다)는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도시·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·군계획시설 중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도시·군계획시설 또는 그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·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도시·군계획시설(이하 이 조에서 “장기미집행 도시·군계획시설등”이라 한다)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해당 지방의회의 「지방자치법」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정례회 또는 임시회의 기간 중에 보고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를 거칠 수 있다. <신설 2012.4.10, 2014.11.11>

1~3 생략

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에 보고한 장기미집행 도시·군계획시설등 중 도시·군계획시설결정이 해제되지 아니한 장기미집행 도시·군계획시설등에 대하여 최초로 지방의회에 보고한 때부터 2년마다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지방의회의 보고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. <신설 2012.4.10, 2014.11.11>

④ 지방의회는 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·군계획시설등에 대하여 해제를 권고하는 경우에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보고가 지방의회에 접수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제를 권고하는 서면(도시·군계획시설의 명칭, 위치, 규모 및 해제사유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)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. <신설 2012.4.10>

⑤ 제4항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·군계획시설등의 해제를 권고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상위계획과의 연관성, 단계별 집행계획, 교통, 환경 및 주민 의사 등을 고려하여 해제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제48조제5항에 따라 해당 장기미집행 도시·군계획시설등의 해제권고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해제를 위한 도시·군관리계획을 결정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 해제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를 해제권고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소명하여야 한다. <신설 2012.4.10>